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52
----------	-------

발의연월일 : 2025. 11. 21.

발 의 자 : 강명구 · 서지영 · 윤한홍
서천호 · 김용태 · 이성권
엄태영 · 김정재 · 안철수
김승수 · 나경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 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